

##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전부개정 2011년 1월 10일 조례 제1122호  
일부개정 2011년 12월 14일 조례 제1175호  
(행정기구 설치조례)  
일부개정 2017년 4월 3일 조례 제1563호  
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 
일부개정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693호  
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 
일부개정 2022년 1월 13일 조례 제1971호  
(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 
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8조에 따라 시정 주요현안 및 과제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오산시정책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 1. 13>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.

1. 시의 종합발전계획 및 시책연구개발에 관한 사항
2.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
3.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·추진에 관한 사항 등

**제3조(구성)** ① 시장은 제2조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인원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별 전문가, 시민, 시의원,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**제4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5조(위원의 임기)**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위촉하되,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③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직기간으로 한다.

**제6조(위원의 해촉)**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2. 질병,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
**제7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, 비치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8조(간사)** ① 위원회 등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. <개정 2011. 12. 14, 2017. 4. 3, 2018. 12. 26>

② 간사는 회의개최일 3일전에 각 위원에게 정책제안자료 등 안건을 미리 배부하고,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제반업무를 보좌한다.

**제9조(비밀업수의 의무)**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0조(수당 등)**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「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11. 12. 14 조례 제1175호, 행정기구 설치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⑤ 「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  
제8조제1항 중 “기획감사담당관”을 “기획감사관”으로 한다.

⑥ 부터 ⑤0 까지 생략

**부칙** <2017. 4. 3 조례 제156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부터 ㉗ 까지 생략

㉘ 「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8조제1항 중 “기획감사관”을 “기획예산관”으로 한다.

㉙ 부터 ㉛4 까지 생략

**부칙** <2018. 12. 26 조례 제169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부터 ㉚ 까지 생략

㉛ 「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8조제1항 중 “기획예산관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
㉜ 부터 ㉞2 까지 생략

**부칙** <2022. 1. 13 조례 제1971호,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 
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>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